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용 대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12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2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및 시간제 근무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 공고생략 범위의 구체화,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인사반영 등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상위 법령에서 정한 내용은 삭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결격사유 규정 삭제(안 제4조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적용
-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안 제4조제3항)

-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근거 마련(안 제5조제2항)
 - －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이수기회 부여(안 제8조의2)
- 당연퇴직 규정 삭제(안 제9조)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적용
- 근무성적평정 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안 제12조)
-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4. 검토의견

가. 개정취지

이번에 제출된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 및 시간제 근무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공고생략 범위의 구체화,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인사반영 등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상위 법령에서 정한 내용은 삭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상위법령(지방공무원법 제31조와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규정(안 제4조제1항)과 당연퇴직 규정을 삭제(안 제9조)하고,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고(안 제4조제3항),

별정직 임용시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공고생략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5조제2항),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과 이수기회를 부여하고(안 제8조의2),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며(안 제12조), 시간제 근무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안 제12조의2)하는 것임.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 및 시간제 근무의 근거를 도입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고생략 범위의 구체화,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인사반영 등 별정직 인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